

법무매거진

“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인정, 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7월 19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법의 적용 대상을 주체인 인간, 객체인 인간이 소유한 물건 두 분류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동물도 민법 98조 상의 ‘유체물’(형태를 가진 물건)로 간주돼 왔다. 이제는 동물에 관한 조항을 새로 만들어 민법 적용 대상을 인간·동물·물건 세 분류로 나누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다만 법무부는 민법 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넣으면서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함께 넣기로 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동물은 여전히 권리 객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물건 분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라며 ‘동물과 관련한 여러 법개정을 논의하기 앞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돼 재산압류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다. 실제 지난 2018년 경기도 평택에 사는 A씨는 빗을 갖지 못해 집에서 키우던 잡종견 두 마리를 법원에 압류당했다. 이 개들은 동물 감정사에 의해 각 15만원과 10만원에 가격이 책정돼 팔려나갔다. 법무부는 앞으로 반려동물을 법원의 강제 집행 대상에 제외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심의관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와 물건이 아닌 존재로 보는 법체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동물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같지 어렵다고 본다.”며 “처벌 수위도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반려동물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받는 손해배상액도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망은 ‘물건의 멸실’로 취급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정도의 배상액만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출처/조선일보)